탄 원 서

사 건 번 호	2026노2154 (제1심 2026고합87)
사 건 명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피 고 인	김봉규 / 전 육군 대령
당 시 보 직	전 국군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
탄 원 인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피고인과 관계	_____
탄원인 주소	_____
연 락 처	_____
제 출 처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
법 원 주 소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1. 탄원의 취지

탄원인은 피고인 김봉규에 대한 항소심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고의와 구체적 실행행위를 다시 검토하시고, 법률이 요구하는 요소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죄 판단이 유지된다면 가담 정도에 비례하는 선처를 예비적으로 청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민주적 헌정질서의 기본입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관여한 준비·출동의 과정에서 피고인 개인이 실제로 무엇을 알고 결정했는지는 별도의 입증을 필요로 합니다.

2. 탄원의 이유

2-1. 1심 판단과 개별적 쟁점

2026년 8월 27일 1심은 피고인이 정보사령부 관계자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인력 운용과 직원 신병 확보 계획 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관위의 기능을 강압으로 제한하는 결과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어떤 사전 회의에 참석했는지, 제2수사단과 관련한 논의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인원 소집의 실제 지시권자가 누구였는지, 대상자와 임무 내용이 피고인에게 언제 전달되었는지 객관적인 기록에 따라 세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무죄 판단을 위한 사실과 고의의 구별

인력 편성이나 준비 업무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국헌문란 목적의 중요임무에 고의로 가담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의 전체를 작성한 사람과 일부 임무를 전달받아 행정적 준비를 담당한 사람을 구별하고, 피고인이 강제적 체포 또는 선관위 기능 침해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를 증거로 판단해 주십시오.

피고인의 발언·메모·통화 기록에서 임무의 실질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회의에서 실제로 다룬 내용이 무엇인지, 사후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어느 정도 알았는지 구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1심의 불리한 사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정황의 연결만으로 고의를 추정하지 않는 엄정함을 부탁드립니다.

2-3. 직권남용에 관한 별도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실제로 어떤 부하 지휘권이 있었고, 누구에게 어떠한 의무 없는 행위를 명령하였는지, 선관위 직원의 구체적인 권리가 누구의 어떤 지시에 의해 방해되었는지 각 요소를 나누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수행한 준비행위와 실제 선관위 현장에서 실행된 행위가 서로 다른 사람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다면, 그 차이가 공소사실과 법률적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의 법적 요건을 각각 엄격하게 심리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2-4. 유죄가 유지될 경우 선처 요청

항소심이 1심 판단을 전부 또는 일부 유지한다면, 사전 계획에 관한 인식의 정도, 직접 명령한 범위, 동원한 인원과 그 역할, 현장 강제력 행사에 대한 실질적 기여, 다른 지휘관의 결정과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주십시오. 피고인이 한 행위와 하지 않은 행위를 명확히 구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심 징역 7년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형벌입니다. 상급 지시가 면책 사유는 아니더라도 상황을 인식할 기회, 독자적 판단의 여지, 실제 결과가 발생한 정도는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작 가능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된다면 사실로 확인된 내용에 한정하여 선처의 근거로 삼아 주시기를 청합니다.

2-5. 항소심에서 추가로 확인해 주실 사항

정보사령부 내부의 회의·인원 소집·현장 출동은 참여자별 역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어느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직접 듣고 승인했는지, 선관위 직원을 강제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실제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인력 편성의 지휘권자가 누구였는지를 자료에 따라 확인해 주십시오.

중앙신문단의 통상 업무와 당시 요청받은 업무 사이의 차이, 실제 부하에게 전달된 임무의 문구, 계엄해제 이후 지시 변경 여부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결과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준비 단계의 모든 사람에게 같은 책임을 부과하지 않기를 청합니다.

3. 결어

재판부께서 피고인 김봉규에 관하여 행위, 인식, 중요임무의 수행 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하시고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유죄 판단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다른 관여자들과 역할을 구분한 합당한 형을 청합니다.

헌법기관에 대한 침해의 중대성과 피고인 개인의 정확한 책임 판단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재판부의 공정한 심리를 존중하며, 사안의 중대성 속에서도 한 사람의 구체적 책임을 헤아려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탄원인 : _____ (서명 또는 날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 귀중